

울산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나121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변 론 종 결 2022. 3. 22.

판 결 선 고 2022. 4. 26.

제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21. 4. 1. 선고 2020가소6171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71,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7. 21.부터 2018. 4. 30.까지 부산 북구 C건물, 관리동 1층에서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2. 15. E 주식회사로부터 15인승 그랜드스타렉스어린이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5년 할부로 31,400,000원에 구입하여 2017. 3. 9.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후, 이를 이 사건 어린이집 통학차량으로 이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비품 일체 및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은 양도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8. 4. 30.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것을 인가하였고, 원고는 2018. 5.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마. 부산광역시가 실시한 2018년도 어린이집 특정감사결과,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비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9,741,203원이 지출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되었다.

내역	지출기간	금액(원)
차량할부금	2017. 4. ~ 2018. 4.	7,480,673
차량등록비	2017. 3. 8.	1,657,510
차량보험금	2017. 5. 31.	590,920
자동차세	2017. 4. 21.	12,100
계		9,741,203

바. 이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9. 4. 26. 피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할부대금 7,480,673원 중 할부이자 1,529,326원을 제외한 할부원금 5,951,34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으로 이용된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율 29.9%를 반영하여 산정한 4,171,890원을 어린이집으로 여입할 것을 명하는 개선명령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개선명령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409), 부산지방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개선명령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개선명령을 취소하였다[위 판결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차량을 양도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사회복지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회계부정,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아.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20. 4.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 위반사항

2017. 3. 12. 이 사건 차량 구입 후 차량 할부금 등 차량 관련 비용이 2017. 3.~2018. 4. 에 걸쳐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되었음에도, 2018. 5. 대표자 변경시 차량을 전대표자에게 인계받지 않고 전 대표자가 차량을 가지고 가게 함.

○ 행정처분: 개선명령

- 차량을 반환받거나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한 차량할부금(4,171,890원)을 어린이집으로

여입할 것

○ 처분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1항 제4호

자. 원고는 이 사건 개선명령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6. 30. ‘어린이집은 재산을 투명·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어린이집은 이 사건 차량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여 어린이집 재산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차. 원고는 2020. 8. 26. 자신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부산은행 (계좌번호 1 생략))으로 4,171,890원을 입금하였다1)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비로 할부대금을 지급한 어린이집의 비품 및 자산에 해당하여 영업양도시 당연히 승계되는 항목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차량을 양도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합의는 강행법규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개선명령을 받고 4,171,890원을 여입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71,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하므로, 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간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령의 주체 및 종류를 규정한 조문일 뿐, 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더욱이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5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 ‘명령의 불이행’을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3)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치·운영을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시설 및 운영권의 양도가 가능한 점, 이 사건 개선명령은 원고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거나, 차량할부금(4,171,890원)을 여입하라는 것으로, 원고에게 반드시 이 사건 차량 자체의 반환을 명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양도나 어린이집 비품 및 자산의 처분에서 이 사건 차량을 제외하는 행위가 사법상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어린이집 운영비로 구입한 물품의 양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만큼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 및 운영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영업양도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제외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제1항의 나.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2. 15.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원고에게 양도한 2018. 4. 30.까지 이 사건 차량을 구입목적에 맞게 어린이집 원생들의 통학용으로 사용한 점, ② 피고가 자신의 사적 목적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비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량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이나 할부금 상당액의 여입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에 의해 정해질 문제로 봄이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개선명령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양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어린이집 재산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원고의 귀책사유에 근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단순히 영업양도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제외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영, 판사 이주황, 판사 최희동

1)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8. 26. 13:48 위 4,171,890원을 입금한 후 그날 13:55 그 중 3,000,000원을 원장급여 명목으로 출금하였다. 이후 그 나머지는 임대료나 식비, 유류비, 문구류·비품 대금 등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하여 2020. 9. 20.경 위 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위 기간 동안 별개의 입금액도 포함하여 고려할 때 그러하다).